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9호, 2012.2.8.)」을 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 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의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및 산정방법」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및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신 설

I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 항관련[별표2]요 양급여비용중본 인이부담할비용 의부담률및부담 액제1호나목비고 5에따른재진진찰 료본인부담률경 감대상및산정방 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관련[별표2]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할비용의부담률및부담액제1호나목비고5에따른재진진찰료본인부담률경감대상및산정방법은다음과같이함  - 다음 - 가.적용대상 (1) 대상질환: 고혈압(I10) 또는 당뇨병(E11) (2) 대상기관: 의원 (3) 대상환자: 대상질환으로 대상기관에서 진료받는 건강보험 환자 중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해의료기관에서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의사를 표명한 환자, 이 경우 요양기관은 대상환자가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함  나.산정방법:상기'가'항에따른대상질환을주상병으로진료한경우에 한하여 환자가지속적으로관리받을의사를표명한익일부터재진 진찰료 (AA250)로 산정함.

개 정

# I . 행위

#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 찰료 산정방법	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의거가입자및피부양자에게실시하는건강검진당일동일요양기관에서건강검진과는별도로질환에대한진찰이이루어져의사의처방(약제처방전발급,「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에의하여산정가능한진료행위)이발생한경우해당진찰료는다음과같이산정함 다음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가'에의거초진(또는재진)

진찰료의50%를산정하며,코드는다음과같이기재함. 해당사유에 대하여는진료기록부에기록하고,「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에의하여작성·청구토록함.

- (1)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검진포함)시질환에대한진 찰이이루어진경우: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일반건강검진은3,생애 전환기건강검진은4로기재
- (2) 암검진시질환에대한진찰이이루어진경우:산정코드세번 째자리에5로기재
- (3) 영유아건강검진시질환에대한진찰이이루어진경우:산정 코드세번째자리에2로기재

나.상기'가'항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에의거2개이 상의진료과목이설치되어있고해당과의전문의가상근하는요양기관 에서건강검진당일검진실시의사와전문과목및전문분야가다른진료 담당의사가건강검진과는별도로질환에대하여진료한경우에한하여 초진(또는재진)진찰료를산정할수있음.

다.또한,건강검진을실시한요양기관에서동일의사에게검진결과에 대해다른날설명하는것은검진결과상담에해당되어진찰료를별도산 정할수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 호관리료 차등적 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간호인력을확보하지못한요양기관에서간호서비스의일 부를보호자나간병인에게위임하는등입원진료시간호서비스의질이 저하되는바람직하지않은현상을해소하기위해서시행하고있는[간 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관련기준은다 음과같이함 다 음 - 가.일반병상기준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 등제의기준이되는일반병상은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한병상증「건강보험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 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2.라(2)에 의한일반병동의병상을말함.다만,신고한병상보다더많은병상을운 영하는경우에는운영병상으로함.

나.환자간호업무에종사하지않은간호사:근무표상일반병동에배치 되어있다고하여도실제환자간호를담당하지않으면일반병동근무간 호사수에서제외하여야함.(간호감독,전임노조,가정간호사,호스피 스등)

다.소수점이하값의처리:간호등급산정시평균병상수와평균간호사 수는각각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함.

라.임시직간호사(시간제,계약직등)산정기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준수하고,3개월이상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에산정함.

(1)상급종합병원·의원·한의원:임시직간호사중1주간의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제외하고44시간(다만,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시간이주 40시간인요양기관은40시간)인근무자의경우1인으로산정

(2)종합병원(서울특별시소재):임시직간호사중1주간의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제외하고44시간(다만,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시간이주 40시간인요양기관은40시간)인근무자의경우3인을2인으로산정

(3)종합병원(서울특별시외소재),병원:임시직간호사중1주간의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20(이상)~30시간(미만)인근무자의경우0.4인,30(이상)~40시간(미만)근무자는0.6인,40시간(이상)근무자는0.8인으로산정하며,「소득세법」시행규칙제7조제4호에의한의료취약지역소재요양기관은각각0.5인,0.7인,0.9인으로산정(4)다만,임시직간호사를고용하는경우,정규직간호사의무고용비율은종합전문요양기관및종합병원은100분의80으로하고병원급이하요양기관은100분의50으로함.

마.출산휴가자및육아휴직자대체간호사:종합병원,병원의1주간의 근로시간이휴게시간을제외하고44시간(다만,근로기준법에의한근 로시간이주40시간인요양기관은40시간)인근무자의경우1인으로산 정

바.순환근무간호사:일반병동과외래등특수부서를순환또는파견 (PRN포함)근무하는간호사로는간호의질향상을기대할수없으므로 해당간호사는산정대상에서제외함.

사.정신보건의료시설중폐쇄병동:정신보건의료시설중폐쇄병동이 라함은일반적으로다른병동과구분되어있고일반인의출입이통제되 는병동으로서정신건강의학과환자만을입원시키는병동을말함.

아.미숙아실:미숙아라함은미숙아를포함한질병이있는신생아의총 칭(sickbaby)을말하며미숙아를수용하는미숙아실은신생아실의범 주에포함되므로일반병상수에서제외함.자.조기진통실:분만실내 의조기진통실은일반병상수에서제외함.

차.모자동실:모자동실에입원하는산모의병상은일반병동의병상으로산정함.

카.간호인력및등급신청

(1)요양기관은별지제2호서식에의한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산정현황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매분기말20일까지제출하
		여야하며미제출기관의경우7등급으로산정함.(다만,종합전문요양
		기관, 의원, 한의원의경우미제출시6등급으로적용)
		(2)병동별병실현황:별지제3호서식에의한요양기관병동별병상운
		영현황통보서를제출하여야하며,변경사항발생시즉시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제출하여야함.
		(3)간호인력신고:별지제4호서식에의한요양기관간호인력일반현
		황통보서를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항발생시즉시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제출하여야함.
-l a	וו וא ד ג או וו	정신의학적재활치료에유용한밤병동(NightHospital)은회복중이
가6	밤병동 수가 산	거나또는경한만성적증상을가진환자가사회생활을하면서이용하는
낮병동입원료	정방법	병원으로진료수가는가6낮병동입원료에준용하여산정함.
		타법령에의거입원진료를받고있던환자(산재,자동차보험등)또는일
		반으로입원진료를받고있던환자가건강보험으로적용될경우입원환
		자의약품관리료는건강보험적용일을시점으로하여해당소정점수의
	타 법령에 의거	의약품관리료를산정함.
	진료를 받고 있	아울러,입원진료를받고있던의료급여수급권자가건강보험가입자
가11	던 환자가 건강	또는피부양자가될경우,의약품관리료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의약품	보험으로 적용될	   기준에관한규칙에의거연계하여퇴원일을기준으로일괄청구하여야
관리료	경우 의약품관리	하나,진료비보상주체가다르고,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경
	료 산정방법	우의약품관리료등제반비용이포함되어있어이를연계하여계산할경
		우중복산정되는바,입원환자가의료급여에서건강보험으로자격이
		변경된경우에도건강보험적용일을시점으로하여해당소정점수의의
		약품관리료를산정함.

#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검 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실시한갑 상선기능검사의 인정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상병에실시한나329트리요도타이로닌(T3),나 333싸이록신(T4),나336갑상선자극호르몬(TSH)검사의인정기준은다음과같이함.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 투여를 투여한 경우 2. 다만,나495항마이크로좀항체(AntimicrosomeAb)검사,나494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AntithyroglobulinAb)검사는T3,T4,TSH검사상이상이있어시행한경우인정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2-1 뇌정위적방사 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 수술(감마나이 프,사이버나이 프,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인정기 준	-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삼차신경통 · 제 1영역의 삼차신경통 (9) 파킨슨병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10) 간질 -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간질로서 간질병 소가 확인된 경우 -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부병변인 경우 (11) 정신질환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치료를했어도호전이없는경우 나.수기료산정방법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 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 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F/U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봄)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날짜를 달리하여 여러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 로 인정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병행 시행다발성 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 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 제8장 정신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정신요법료 산정 에 대하여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8장정신요법료[산정지침](2),(3)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지도 하에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가실시한경우에도산정할수있다」라함 은,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2조제4호및제5호에해당 하는요양기관에서동규정동조제3호에해당되는전공의(레지던트) 를뜻하는것임.따라서,정신건강의학과수련병원또는수련기관일지 라도수련과정을3년이상이수후전문의자격을미취득하였거나2년이 상이수후수련을중단한의사는해당될수없음.
	정신건강의학과 에서 실시한 생 활요법의 급여여 부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생활요법의수기료는소정환자관리료에포함 되어있으므로별도산정할수없으나,다음의소요되는재료및비용은 실비수준으로환자부담으로함. - 다 음 -

	지 시 <b>긴</b> 미 기 중 시	가.차모임(커피,각종쥬스,차를마시며환자들간의대화기회증진): 커피및각종음료수의비용 나.외출(실생활에적응시키기위하여창경원,경복궁,영화관,미술관 람,미장원,외식등을단체로시행함):입장료,관람료,식사비,교통비 등.다만,식사비는병원식비와외식비를이중부담시킬수없음. 다.꽃꽂이,요리실습에소요되는재료비 라.크리스마스파티및생일파티의케이크,카드및선물비용
	정신전문간호사 가 수행하는 치 료적 놀이, 개인 발달평가, 집중 부모 집단교육, 개인집중 가족상 담의 급여여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지도하에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또는상근하는전문가(정신간호사,사회복지사등)가실시한경우에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정신전문간호사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지시없이단독으로수행하는치료적놀이,개인발달평가,집중부모집단교육,개인집중가족상담에대하여는기존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과중첩되는내용으로서별도산정할수없음.
	정신보건임상심 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 여부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8장 [산정지침] (3)에서는 "(2)에서규정한분류항목이외는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지도하에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또는상근하는전 문가(정신간호사,사회복지사등)가실시한경우에도산정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는바,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상근하는전문가'에포 함될수있으므로해당정신요법료를산정할수있음.
아1 개인정신치료	정신의학적응급 처치,기질성정신 질환에심층분석 요법인정여부	기질성정신질환또는정신의학적응급처치가필요한상태에아1나집 중요법및아1다심층분석요법은실시하기곤란하므로인정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함.다만,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F06'뇌손상,뇌기능이상및신체질환에의한기타정신장에'중에서F06.0~F06.6주인경우에는환자상태에따라선별적으로실시시사례별로인정함.주)F06.0기질성환각증(Organichallucinosis)F06.1기질성긴장성장애(Organiccatatonicdisorder)F06.2기질성망상성[정신분열유사]장애(Organicdelusional[Schizophrenia-like]disorder)F06.3기질성기분[정동]장애(Organicmood[affective]disorders)F06.4기질성분안장애(Organicanxietydisorder)F06.5기질성해리장애(Organicdissociativedisorder)F06.6기질성정서불안정[무력증성]장애(Organicemotionallylabile[asthenic]disorder)
아4 작업및오락요 법	정신건강의학과 에서실시한연극, 퀴즈놀이의급여 인정여부	정신건강의학과에서실시하는단순연극,퀴즈놀이,실내운동회,노래 자랑,무용요법,산책,서예요법등은아4작업및오락요법으로산정함.
아10 정신의학적응 급처치	정신의학적응급 처치후실시한지 지요법인정여부	아10정신의학적응급처치후아1가지지요법은인정함.

아10정신의학적 응급처치시에아2 집단정신치료실 시시인정여부

아10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난폭,폭력또는정신증상의악화로타인에게피해를줄가능성이있는경우에결박또는물리적인힘을가하면서약물등으로응급처치를하여불안정상태를진정시켰을때에한하여산정할수있으므로,동처치시아2집단정신치료는인정하지아니함.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6 척추고 정술[기기,기 구 사용 고정 포함]	척 추 경 나 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 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최추경나사(Pediclescrewsystem)를이용한척추고정술의인정기 준은다음과같이함. -다음- 가.불안정성척추골절 (1)척추의삼주(threecolumn)가모두손상된경우 (2)방출성척추골절로인해후만각30도이상또는압박율40%이상의 변형이있거나,척추관침습이50%이상인경우 (3)MRI상후방인대복합체의전체구조의손상이확인된경우 (4)근력저하를포함한뚜렷한신경학적손상이동반된경우 (5)적절한보존적요법에도불구하고심한동통또는신경증상을동반 한후만각의진행이발생하는경우 나.골다공증성골절(T-score≤-3) (1)뚜렷한신경학적결손이있는경우 (2)적절한타치료방법에도불구하고,심한통증이장기간지속되며변 형의진행으로인해교정이필요한경우 다.척추종양 라.감염성척추질환
		마.척추변형 (1)특발성척추측만증
		(가)15세미만의환자에서40도이상의만곡이있는경우 (나)성장이끝난환자에서50도이상의만곡이있는경우 (다)흉추부의전만곡이동반된경우 ※특발성척추측만중에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10도이상경사 나늑골고측정기로3cm이상의늑골고가확인되는경우흉곽성형술은 별도인정함.
		(2)퇴행성측만증 적절한보존적요법에도불구하고심한척추관협착증증상이지속되는 환자로서,아래의소견중2개이상이확인되는경우에인정함.

I	1	ı
		(가)방사선사진상25도이상의측만 (나)20도이하의요추부전만 (다)뚜렷한회전아탈구 다만,과도한장분절고정의경우는각도의측정이나증상의정도판전후방유합술의인정등에서보다엄격하게기준을적용하기로함. 바.퇴행성척추질환에척추경나사(Pediclescrewsystem)를이용적추고정술시는"척추유합술시사용하는고정기기의인정기준"에당되는경우인정함.다만,cage와병용사용시는질병의정도등을고하여사례별로인정함. 사.Flexiblerodsystem을이용한척추고정술은척추유합술과동시시술한경우에한하여인정하되,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자473-1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은다음과같은경우에요양급
두개강내신경	자473-1 두개 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 준	를인정하며,동인정기준이외시행하는경우에는전액본인부담토함.  - 다 음 - 가.운동장애 (1) 파킨슨병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가 어렵고 중상이 5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는 경우 (2) 진전(tremor)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 이상증(dystonia)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긴장 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상증이 있는 경우나.간질3년이상항경련제치료에불응하는난치성간질로기존의수적치료가불가능하거나실패한경우다.통증치료 (1)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중(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난치성강박장애난치성강박장애로서아래의조건을모두갖춘우인정함.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 양수술, 자770 결장경 수술	내시경적 박리 (ESD)의 준	절제술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 > 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치료(약물치료,정신치료,전기충격요 등)에불용성인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권고가있는경우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은다음과같은경우를모두충족한경우산정한 다 음 1.본인일부부담하는경우 가. 대상 : 위(Stomach) 나. 적응증 :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함. (1)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2) 절제된 조직이 3㎝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동반한 선종 (3) 점막하 종양 다. 수기료 (1)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 자765다 내시경적 상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 (2)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 : 자765나 내시경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EMR)의 소정점수 (단,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는 해당 인정준에 의하여 산정함.) 라. 치료재료 (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용 치료재료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 인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1개를 추가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 유문부, 기저부) (다)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내시경용 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함.

마.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토록 함(특정 내역란 기재)

- (1)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 (2) 침윤 깊이
- (3)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 (4) 절제면(수평 및 수직)의 암세포 존재 여부
- (5) 절제된 병변의 크기
- 2.전액본인부담하는경우

가. 대상 및 적응증 :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육안소견을,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함.

- (1) 위 (Stomach) :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이외의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 (2) 식도 (Esophagus)
- (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 (나) 선종 및 이형성증
  - (다) 점막하 종양
  - (3) 결장 (Colon)
  - (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 (나) 크기 2cm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 (다) 점막하 종양
  - (라)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 나. 수기료

- (1) 조직을 일괄 절제한 경우
- (가) 위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점막 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4)
- (나) 식도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5)
- (다) 결장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소정점수(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6)
- (2) 조직을 일괄 절제하지 못한 경우 (단,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는 해당 인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 (가) 위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점 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 담 코드 QX701)
- (나) 식도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점 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 부담 코드 QX702)
- (다) 결장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EMR)의 소정점수 (전액본인부담 코드 QX703)

#### 다. 치료재료

#### (1) 위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는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전액본인부담 코드QX704)에 사용한 경우 1개 전액본인부담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로 1개를 추가 전액본인부담함

- 아 래 -

- (ㄱ)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 (ㄴ)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 부, 유문부, 기저부)
- (나) 내시경용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시술당 1개 전액본인부 담함.

#### (2) 식도 및 결장

-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전액본인부담 코드QX705)및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전액본인부담 코드QX706)에 사용한 경우 최대 2개까지전액본인부담함.
- (나) 내시경용주사침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은 시술당 1개 전액본인부 담함.

#### 라.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요건

### (1) 시술 전 환자동의서 작성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시술성적 (합병증 및 재발률 등),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인력 및 시설 기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하여야 하며(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 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3)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토록 함(특 정내역란 기재) (가)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나) 침윤 깊이 (다)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라) 절제면(수평 및 수직)의 암세포 존재 여부 (마) 절제된 병변의 크기 (4) 시술환자 등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 의하여항목란(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해 당목번호)에해당코드로시술내역(수기료및치료재료)기재

Ⅲ. 치료재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 4. 처치 및 수술료 등

사용)를이용한척추유합술은적절한보존적요법에도불구하고임소증상의호전이없는다음의경우에인정함. -다음 - 가.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사용)를이용한척추유합술은적절한보존적요법에도불구하고임소증상의호전이없는다음의경우에인정함다 음 - 가.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s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기기의 인정기준 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① 착추관협착증 ②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①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		사용하는 고정	-다 음 - 가.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① 척추관협착증 ②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①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

②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나.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 (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상기'1'항에의한기준은모든종류의cage에적용됨
2.고정기기중Flexiblerodsystem을이용한경우에도상기'1'항의기
준을적용함.

I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진찰 료또는가2 입원료	억제대사용(부 분, 전신)	가1외래환자진찰료또는가2입원료의소정점수에포함됨. 다만,정신건강의학과환자의응급의경우에환자에게억제나격리 행해지는행위는아10정신의학적응급처치의소정점수에포함됨.		
	간호상담	정신건강의학과입원환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일반적인간호상담의 경우로가2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소정점수에포함됨.		
가8 협의진찰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초,재 진면담),재활의 학과로자문의뢰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가8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를 산정함.		

## 제8장 정신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아10정신건강 의학적응급처 치	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응급의경 우에환자에게억	아10 정신의학적응급처치에포함

제나격리시행해			
지는행위)			